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의 자원·에너지문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하여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국가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이행실적에 따른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자치구 매립 및 소각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징수되고 징수 부담금의 70%가 다시 교부되어 연간 42억원 내외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한 자치구, 사업자,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